

환자 및
보호자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23. 5.



0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0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 및 진료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 다른 환자과 보호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칼, 송곳 등)의 의료기관 반입을 금지합니다.



03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의료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전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 상기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무리한 진료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04 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예)

유형	행동방식	형사처벌
언어폭력	폭언, 욕설	의료법 제12조제3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성	신체근접시 폭행죄, 의료법 제12조제3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상해죄 등
	협박	의료법 제12조제3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협박죄 등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폭행	의료법 제12조제3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상해죄, 중상해죄 등
	물건 집어 던짐	의료법 제12조제3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신체근접시 폭행죄, 폭행치상죄 등
	진료실 난입	의료법 제12조제2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업무방해죄 등
	기물파손	의료법 제12조제2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손괴죄 등
	주취상태 소란·진료방해	의료법 제12조제2항,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등
	언론, 인터넷 등 게재 위협	협박죄 등
성희롱	언어적 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가능
	시각적 희롱 (외설적인 사진·그림 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일정한 경우(통신매체를 통한 외설적 사진 등 송부, 신체노출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등
성추행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강제 추행죄, 모욕죄 등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	강간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

※ 위 불법행위에 대한 상습범의 경우 형법 제264조 및 제305조의2 등에 따라 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의료법 개정·시행('19. 4. 23.)

(중정) 의료법	(개정) 의료법('19. 4. 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87조의2 제1항) 제12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8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90조의2)

05 무리한 요구나 행동은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환자와 보호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행하는 진료행위에 협조하고, 의료인의 지도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특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무리한 요구나 행동을 할 경우, 의료진 보호를 위하여 담당 의료진이 교체되거나 진료가 거부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의 경우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1)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医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1.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2018. 9. 대한의사협회)
2.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2020. 12.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3.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업종별 매뉴얼 (2019. 12.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박다래·조준현, 병원법무 실무(2018. 대한병원협회)
5. 대한요양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의견 반영(22년 10월)